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【명칭】

본 법인의 명칭은 “사단법인 대안공간·풀” (이하 “본 단체”라 한다.)이라고 한다.
(국제 명칭은 Alternative Space Pool 이라 하며, 약칭은 ASP라 함)

제 2조 【목적】

본 단체는 대안적 미술인간의 상호연대와 젊은 작가 발굴, 지원 및 우리미술의 자생적 담론 형성을 통하여 우리미술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미술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【소재지】

본 단체의 전시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-21 백악미술관 빌딩 지하 1층에 둔다.

제 4조 【사업】

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
1. 미술인들 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.
 - 1) 전시공간을 통한 정보의 교류 및 전달.
 - 2)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및 담론 생산.
2. 사회적, 역사적 현실과 예술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전시 사업.
3. 신진작가의 발굴 및 지원 사업.
4. 심포지움, 세미나 등을 통한 미술 비평 사업.
5. 아카데미, 워크숍, 강연을 통한 미술 교육 사업.
6. 국내외 대안공간과의 교류 사업.
7. 기타 본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.

제 5조 【수익사업】

- ① 본 단체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필한 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- ② 본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.

제 6조 【이익의 제공】

- ① 본 단체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,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 본 단체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성별,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.

제 2 장 회 원

제 7조 【회원의 자격】

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단체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
1. 정회원 : 문화예술인으로 활동하거나 본 단체에 애정과 관심이 많은 자로 연회비 50,000원을 납부 한 자
2. 특별회원 : 본 단체에 애정과 관심이 많아 개인은 연 300,000원 이상, 법인 및 단체는 연 2,000,000원 이상 특별 후원하는 회원.

제 8조 【회원의 권리】

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공간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특별회원의 경우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은 없으며 특별회원 중 법인 및 단체는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대표자를 통해 권리를 행사한다.

제 9조 【정회원의 의무】

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1.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
제 10조 【회원의 탈퇴】

회원은 본 단체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제 11조 【회원의 상벌】

- ① 본 단체의 회원으로서 본 단체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- ② 본 단체의 회원으로서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 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제명·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제 3 장 임 원

제 12조 【임원의 종류와 정수】

- ① 본 단체의 임원은 대표 1인, 상임이사 1인, 이사 7인 이상, 감사 2인으로 구성한다.
- ② 본 단체의 임원은 임원 상호간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이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할

수 없으며,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.

제 13조 【임원의 선임】

- ① 본 단체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.

제 14조 【임원의 해임】

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·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
3. 본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 15조 【임원의 임기】

- ①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 16조 【임원의 직무】

- ①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과 이사회 이사장이 된다.
- ② 상임이사는 이사 중 대표의 명을 받아 본 공간의 사무를 관장, 처리한다.
-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 업무에 대한 제반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 1. 본 공간의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2.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보고하는 일
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
 5. 총회나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 17조 【대표의 직무대행】

- ① 대표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대표가 결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을 선출한다.
- ④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대표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 4 장 총 회

제 18조 【총회의 구성】

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 19조 【구분 및 소집】
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1회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-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(E-Mail을 포함한 다)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총회는 제 3항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고 총회 당일 과반수 찬성에 의해 안건을 의결에 붙일 수 있다.

제 20조 【총회소집의 특례】

- ① 대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.
 2. 제 16조 제 4항의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3.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0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 21조 【의결 정족수】

-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

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2조 【총회의 기능】
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2. 본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5. 사업계획 승인
6. 기타 중요 사항

제 23조 【총회의결 제척사유】

이사 및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이사 및 회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 5 장 이 사 회

제 24조 【이사회의 구성】

- ① 이사회는 대표와 상임이사, 이사로 구성한다.
-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- ③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, 정기 이사회는 정기총회전에 개최한다.

제 25조 【구분 및 소집】

- ① 이사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표가 소집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 이사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③ 이사회 소집은 대표가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(E-Mail)를 포함한다)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이사회는 제 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 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- ⑤ 이사회는 온라인상에서도 할 수 있다.

제 26조 【이사회 소집의 특례】

- ① 대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2. 제 16조 제 4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
제 27조 【서면결의】

- ① 대표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(E-mail 문서도 포함한다). 이 경우에 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

에는 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 28조 【의결 정족수】

-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-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표결권은 없다.

제 29조 【이사회 의결사항】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.

1. 본 단체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2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3. 본 공간의 해산에 관한 사항
4.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
5. 업무 집행 및 사업에 관한 사항
6.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7. 기타 본 공간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

제 6 장 재산과 회계

제 30조 【재산의 구분】

본 단체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1. 기본 재산은 본 단체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‘별지 1’ 과 같다.
2. 보통 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 31조 【기본 재산의 처분 등】

- ① 본 단체의 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임대·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 39 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.
- ② 본 단체가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 32조 【수입금】

본 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지원금, 보조금 및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.

제 33조 【차입금】

본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

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34조 【회계연도】

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35조 【예산 및 결산】

- ① 본 단체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본 단체의 세입, 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 회계연도 종료시 현재의 재산 목록과 함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 36조 【임원의 보수】

사무국의 운영을 담당하는 기획실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 7 장 사무부서

제 37조 【사무국】

- ① 본 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을 둔다.
- ② 사무국에 기획실장 1인, 전문직원인 큐레이터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 기획실장, 큐레이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.
-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 8 장 기획자문위원

제 38조 【기획자문위원】

- ① 본 단체의 발전을 위해 약간명의 기획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② 기획자문위원은 현대미술분야 및 문화예술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표가 위촉한다.
- ③ 기획자문위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제 9 장 보 칙

제 39조 【정관의 변경】
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서울특별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40조 【해산과 합병】

- ① 본 단체가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본 단체가 해산한 때에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공간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.

제 41조 【업무보고 등】

-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보고한다.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.
- ② 본 단체가 민법 제 49조 내지 제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 부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42조 【규칙제정】

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단체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 1조 【시행일】

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【경과조치】

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 3조 【창립회원】

이 정관 제 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 창립 당시의 회원은 설립 발기인이며 설립발기인은 설립 당초의 임원(이사)과 동일하다.

직위	성명	주소	임기
대표	김용익	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830-4	3년
상임이사	정덕영	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50-20	3년
이사	김용철	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3 목동아파트 314동 1202호	3년
이사	안규철	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4-1 현대구기빌라 5-304	3년
이사	유선희	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2-1 서흥빌라 202호	3년
이사	윤난지	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-104	3년
이사	윤동천	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54-4 (2/1)	3년
이사	이영욱	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6 (21/3) 주공 아파트 501동 705호	3년
이사	진옥선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18-6 (2/3)	3년
이사	최진욱	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동부센트레빌 103-2006	3년
이사	최병선	서울시 송파구 가락2동 130-14 신한빌라트 702호	3년
이사	홍명섭	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두산위브아파트 807동 902호	3년
감사	박동천	광주시 북구 용봉동 금호아파트 102-601	2년
감사	정동석	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4-11	2년

제 4조 【설립자의 기명날인】

본 단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
성명	주소	확인
김용익	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830-4	
정덕영	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50-20	
김용철	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3 목동아파트 314동 1202호	
안규철	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4-1 현대구기빌라 5-304	
유선희	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42-1 서흥빌라 202호	
윤난지	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-104	
윤동천	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54-4 (2/1)	
이영욱	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6 (21/3) 주공 아파트 501동 705호	
진옥선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18-6 (2/3)	
최진욱	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동부센트레빌 103-2006	
최병선	서울시 송파구 가락2동 130-14 신한빌라트 702호	
홍명섭	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두산위브아파트 807동 902호	

정관 별지 1.

사단법인 대안공간 풀 기본 재산

구분	금액	비고
보증금	24,000,000	
예금	26,000,000	
계	50,000,000	

(단위 : 원)